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6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12.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 정부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의 지원 ◦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 노후거점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그 밖에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노후거점산업단법 개정안”이라 함)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²⁾의 원활한 조성³⁾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1,306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단지 내 12만여 개의 기업에서 23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60년이 경과하면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이 482개로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등 공장과 기반시설 노후화와 이로 인한 청년 인재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2024. 4. 29.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⁴⁾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⁵⁾

이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등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5)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및 기금의 운영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 재원을 통해 노후거점산업단 개발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 개발사업에 보다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기금 신설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등에서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및 탄소중립형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노후거점산업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 사례>

(단위: 억원)

회계 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산업단지환경 조성사업	산업단지 디지털·친환경 전환, 근로·정주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지원	3,972 (1,868) ⁶⁾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형산업단 환경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에너지 플랫폼(FEMS) 구축 등 지원	1,095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노후거점산업단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신설에 대해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낮으며, 기금 재원의 불확실성이 높고, 타 회계·기금 등을 통해 유사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기금 신설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신설은 노후산업단지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신설 추진은 기획재정부 심사절차 등을 감안할

6)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정부-민간자본 매칭하여 창업·R&D센터, 오피스텔·문화컨벤션 등 주거/편의/문화시설,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지원(2024년 예산 1,868억원).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출연금 등 의존재원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기금 목적사업과 연계된 안정적인 재원 발굴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금 재원이 목적사업과 연계된 사례>

(단위: 억원)

기 금	목 적	예산 규모 (2023년 결산)	주요 재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공익적 기능수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97,527	전기요금 부담금 (3.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방폐물 관리사업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96,069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기술료를 징수 목적인 R&D로의 재투자 장려·촉진	2,021	기술료

자료: 기획재정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신 설>	별표 2 72. 「 <u>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u> 」

문의처

02)6788-5152